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1-117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11월 16일(화)
- 라. 회부일자: 2021년 11월 17일(수)

2. 제출사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 월령 개정(안 제2조)
- 나. 인용 법 조항 수정(안 제8조 및 제9조)
- 다. 중성화한 길고양이 방사 장소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16조)
- 라.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제6호
-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 2021. 8. 12.~ 9. 11.(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근거법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 개정안 제2조제2호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¹⁾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²⁾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월령 3개월에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 개정안 제8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제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각각 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인용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임.
- 개정안 제16조제2항은 중성화한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포획장소 외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임.
-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TNR’³⁾ 사업은 중성화한 길고양이를 원래 살던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재개발 등 주변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중성화 이후 포획장소로의 방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이고 이를 감안, 길고양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중성화 이후 다른 장소로의 방사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단서 조항의 추가는 동물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개정이라고 판단됨.

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길고양이 TNR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해 중성화(Neuter) 한 뒤 원래 살던 장소에 방사(Return)하는 방법을 뜻함.

- 개정안 제23조는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되는 것으로, 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 제한 등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문을 열거하고 있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 마포구 반려견 등록 현황

등록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등록 반려견	1,887	5,947	2,044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2021.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1-118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11월 16일(화)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1년 11월 17일(수)

2. 제출사유

마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도시농업위원회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기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의 제명 명시(안 제3조제2항)
- 나.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및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50호」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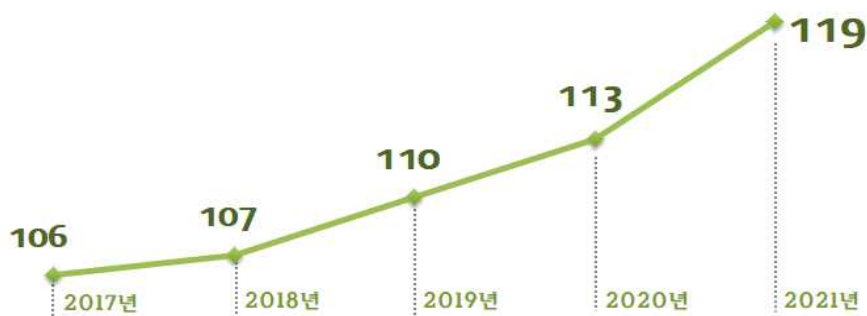
1) 입법예고: 2021. 8. 12.~ 9. 1.(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농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명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 제4조제2항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구민에게 공고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에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있어 계획 변경시마다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7조제1항은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는 개정으로 사료됨. 또한, 같은 조 제2항중 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부구청장’에서 ‘도시농업업무 소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 안 제7조제4항과 안 제9조제1항, 안제10조는 기존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각종 위원회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행정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의 지속적인 정비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연도별 현황**



【관계법령】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7. 2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0호]

제2장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

제3조(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오염의 방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및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을 준수하고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텃밭의 안전성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텃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텃밭농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텃밭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의 잔류 수준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상태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그 밖에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성 점검 조사시료 채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텃밭의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텃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사용한 농자재의 회수 및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사용된 농자재 용기, 오염된 흙, 부산물 등을 도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의 교류 등)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